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9호
----------	------

제출연월일 2005. 6. 9
제 출 자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회복지 전담인력 및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 보장을 위하여 승인된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조정

1) 지방공무원 총수 증원 : 837명 → 847명(10명 증)

○ 본청의 정원 : 437명 → 447명 (10명 증)

2) 승인 정원 : 10명(6급1, 7급2, 8급4, 9급3)

○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장 : 7명(6급 1, 7급 1, 8급 3, 9급 2)

○ 소나무재선충 확산방지 인력(한시정원) : 3명(7급 1, 8급 1, 9급 1)

나. 한시정원 재규정(2006. 12. 31까지) : 7명 ⇒ 10명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소요경비 추계서 참조

다. 합 의 : 기획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2005. 5. 18 ~ 2005. 6. 7)결과 제출된 의견없음

사천시 조례 호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837명”을 “847명”으로 하고, 같은조 제1호중 “821명”을 “831명”으로 한다.

사천시 조례 제479호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항제1호중 “7명”을 “10명”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
총 합계	847	447	16	132	57	22	102	71
정무직 합계	1	1						
단체장(시장)	1	1						
일반직 합계	656	356	10	84	39	19	83	65
4급	6	3	1	2				
5급	45	18	2	6	5	1	7	6
6급	168	96	3	19	11	5	28	6
7급	214	113	1	35	10	6	21	28
8급	156	87	3	20	10	4	15	17
9급	67	39		2	3	3	12	8
별정직 합계	15	1		14				
6급상당	12	1		11				
7급상당	3			3				
지도직 합계	29			29				
지도관								
지도사	29			29				
기능직 합계	146	89	6	5	18	3	19	6
6급	5	4			1			
7급	14	12		1	1			
8급	25	19	2		3	1		
9급	55	32	4	4	5	1	9	
10급	47	22			8	1	10	6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837명</u>으로 하며, 다음 각호 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821명</u> 2. (생략)</p>		<p>제2조(-----) ----- -----<u>847명</u> -----, ---- -----.</p> <p>1. ----- : <u>831명</u> 2. (현행과 같음)</p>		
<p>조례 제479호 부칙 ②(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중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1. <u>7명</u>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3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p>		<p>조례 제479호 부칙 ②(한시정원)----- -----.</p> <p>1. <u>10명</u>-----.</p> <p>2. (현행과 같음)</p>		

개 정 전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
총 합계	837	437	16	132	57	22	102	71
정무직 합계	1	1						
단체장(시장)	1	1						
일반직 합계	646	346	10	84	39	19	83	65
4급	6	3	1	2				
5급	45	18	2	6	5	1	7	6
6급	167	95	3	19	11	5	28	6
7급	212	111	1	35	10	6	21	28
8급	152	83	3	20	10	4	15	17
9급	64	36		2	3	3	12	8
별정직 합계	15	1		14				
6급상당	12	1		11				
7급상당	3			3				
지도직 합계	29			29				
지도관								
지도사	29			29				
기능직 합계	146	89	6	5	18	3	19	6
6급	5	4			1			
7급	14	12		1	1			
8급	25	19	2		3	1		
9급	55	32	4	4	5	1	9	
10급	47	22			8	1	10	6

개정 후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
총 합계	847	447	16	132	57	22	102	71
정무직 합계	1	1						
단체장(시장)	1	1						
일반직 합계	656	356	10	84	39	19	83	65
4급	6	3	1	2				
5급	45	18	2	6	5	1	7	6
6급	168	96	3	19	11	5	28	6
7급	214	113	1	35	10	6	21	28
8급	156	87	3	20	10	4	15	17
9급	67	39		2	3	3	12	8
별정직 합계	15	1		14				
6급상당	12	1		11				
7급상당	3			3				
지도직 합계	29			29				
지도관								
지도사	29			29				
기능직 합계	146	89	6	5	18	3	19	6
6급	5	4			1			
7급	14	12		1	1			
8급	25	19	2		3	1		
9급	55	32	4	4	5	1	9	
10급	47	22			8	1	10	6

기구신설 및 정원 증원에 따른 소요비용 추계서

□ 기 구 : 2개담당 신설(복지기획·산림방제 담당)

□ 정 원 : 837명 → 847명(10명 증원 : 6급 1, 7급 2, 8급 4, 9급 3)

구분(예산과목)	소요비용(천원)	지 급 기 준	비 고
총 계	427,009		
인 건 비	소 계	359,488	· 세부내역 -붙임참조
	기 본 급	170,132	
	수 당	90,470	
	정액급식비	15,600	
	교통보조비	14,760	
	명절휴가비	21,267	
	가계지원비	35,444	
	연가보상비	11,815	
물건비	20,040	· 기관운영, 부서운영, 정원가산 · 직책급업무추진비 · 직급보조비, 특정수행활동비	
이전경비	47,481	·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연금지급금, 국민건강보험금	

□ 세부내역

구분(예산과목)		소요비용	산출근거
총 계		427,009	
○ 인건비		359,488	
- 기본급		170,132	(22,609,200원×1명)+(19,256,400원×2명)+ (16,489,200원×4명)+(14,350,800원×3명)
- 수당	소 계	90,470	
	기말수당	28,356	170,131,200원×2/12
	정근수당	25,520	170,131,200원×1.8/12
	가족수당	5,280	(360,000원×3명)+(600,000원×7명)
	관리업무수당		
	초과근무수당	31,314	(3,463,680원×1명)+(3,108,000원×2명)+ (2,784,960원×4명)+(2,497,920원×3명)
- 정액급식비		15,600	1,560,000원×10명
- 교통보조비		14,760	(1,560,000원×3명)+(1,440,000원×7명)
- 명절휴가비		21,267	170,131,200×1/12×1.5
- 가계지원비		35,444	170,131,200×1/12×2.5
- 연가보상비		11,815	170,131,200원×1/12×1/24×20일
○ 물건비		20,040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정월가산업무추진비			
- 직책급업무추진비			
- 직급보조비		14,040	(1,860,000원×1명)+(1,680,000원×2명)+ (1,260,000원×7명)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6,000	600,000원×10명
○ 이전경비		47,481	
- 성과상여금		8,000	800,000원×10명
- 연금부담금		28,865	260,602,000원×11.076%
- 국민건강보험		5,616	260,602,000원×2.155%
- 연금지급금		5,000	2,500,000원×2명

관계법령발췌

지방자치법

第103條 (地方自治團體의 公務員) ①地方自治團體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經費로써 부담하는 地方公務員을 두되, 그 定員은 大統領令이 정한 基準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한시정원) ① ~ ⑤ 생략

⑥한시정원의 정수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당해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5. (생략)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지침

- 보강인력은 시군별 6명을 기본으로하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자 200명~300명미만 시군은 1명 추가 보강함.
- 정원 승인('05. 5. 12) : 7명(6급 1, 7급 1, 8급 3, 9급 2)

소나무재선충 확산방지 인력보강지침

- 피해면적 30ha이상 또는 피해목이 600본 초과(사천시)
- 정원 승인('05. 3. 19) : 3명(7급 1, 8급 1, 9급 1)